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규정상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서는 그중 일정 금액을 근로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다른 기부금의 경우 공익단체로 하여금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을 맞추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조합비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공시시스템을 통해 회계 결산 결과를 공표한 노동조합의 조합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6. 15. ~ 7.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위노동조합 또는 해당 단위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산하조직(이하 이 조에서 “단위노동조합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위노동조합등에 가입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이라 한다)이 해당 단위노동조합등에 납부한 조합비

1) 해당 과세기간에 단위노동조합등의 회계연도 결산결과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공표되었을 것. 이 경우 단위노동조합등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합원 수가 1천명 미만인 경우에는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1)에 따른 단위노동조합등으로부터 해당 단위노동조합등의 조합비를 재원으로 하여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일정 금액을 교부받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나 다른 단위노동조합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그 연합단체와 다른 단위노동조합등의 회계연도 결산결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공표되었을 것. 이 경우 그 교부받은 단위노동조합등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합원 수가 1천명 미만인 경우에는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80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2호가목1) 및 2)에 따른 결산결과의 공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조합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시시스템 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시결과 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에 관하여는 제8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2. ----- -----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위노동조합 또는 해당 단위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산하조직(이하 이 조에서 “단위노동조합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위노동조합등에 가입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이라 한다)이 해당 단

위노동조합등에 납부한 조합비

1) 해당 과세기간에 단위노동조합등의 회계연도 결산결과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공표되었을 것. 이 경우 단위노동조합등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합원 수가 1천명 미만인 경우에는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1)에 따른 단위노동조합등으로부터 해당 단위노동조합등의 조합비를 재원으로 하여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일정 금액을 교부받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나 다른 단위노동조합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그 연합단체와 다른 단위노동조합등의 회계연도 결산결과도 「노동조합 및

나.·다. (생략)

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3. ~ 5. (생략)

② ~ ⑥ (생략)

<신설>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공표되었을 것. 이 경우 그 교부받은 단위노동조합등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합원 수가 1천명 미만인 경우에는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다. (현행과 같음)

<삭제>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2호가목1) 및 2)에 따른 결산결과의 공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조합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시시스템 등에

⑦ (생략)	<u>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시결과 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연락처	(044) 215 - 4211